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법적 냉소주의 모형, 절차적 정당성 모형 및 법행동
모형을 중심으로 -

홍 성 주* · 김 주 희** · 황 의 갑***

〈요 약〉

범죄신고는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신고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수도권 거주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법적 냉소주의 모형과 절차적 정당성 모형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에 대해 느끼는 법적 냉소주의와 공정성 인식 수준이 북한이탈주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기대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도널드 블랙이 법행동 이론에서 제시한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도출한 사회조건을 기반으로 한 가설 대부분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거나, 상충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냉소성을 감소함으로써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주제어 : 범죄신고, 법적 냉소주의, 절차적 정당성, 도널드 블랙, 법행동 이론, 북한이탈주민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일반대학원 범죄학과) 교수 (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논의 및 제언

I. 서 론

범죄피해의 신고는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인지, 수사, 체포 및 처벌 등의 형사사법 과정을 촉발시키는 첫 단계이다. 대중의 범죄피해의 신고는 공식범죄통계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됨에 따라 법치국가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치안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발생한 모든 범죄 피해가 신고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에 대한 미신고는 암수범죄로 남아 부정확한 공식통계자료를 생산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는 국가형사정책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 사회공공의 안전 보장이라는 형사사법기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대중의 신뢰를 훼손시킨다. 아울러,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은 범죄피해 신고를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협조 의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하고 미신고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암수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적 냉소주의, 절차적 정당성인식, 그리고 법행동이론에 근거한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법적 냉소주의(legal cynicism)는 대중이 법 또는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인식함에 있어서 절차적 공정성의 부재, 대중에 대한 낮은 관심도, 그리고 공공

의 안전을 위한 사명감이 결여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의 냉소성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협조이지(범죄피해의 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herman, 1993; Tyler, 1990). 대중의 법적 냉소성은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및 목격자로 하여금 문제해결 방안으로 경찰에 대한 신고보다는 폭력과 같은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기때문에 범죄발생률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은 법의 공정성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협조이지로 연결되므로(Goudriaan, Wittebrood & Nieuwebeerta, 2005; 2006) 절차적 정당성 역시 대중의 신고 의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또한, Donald Black(1976)의 법행동이론에 의하면, 법의 양적인 분포는 종적분화, 횡적분화, 문화, 조직 및 사회통제 등 다섯 가지 사회적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법의 사용 즉 범죄신고 등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신고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더러 존재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그리고 탈법적 상황의 일상화 경험에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그 취약성으로 인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등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최영신 · 김대근 · 채경희, 2017). 또한, 1998년부터 약 9년간 국내 입국한 8,885 명의 북한이탈주민의 19%가 범죄경력자로 보고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07). 북한과 다른 남한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단계의 법률서비스로부터 격리되어 범죄피해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표적인 방안은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토대로 법적 냉소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이론 및 블랙의 법행동이론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기제에 따른 변인들을 분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상황

통일부(2018)는 북한이탈주민이 2001년 시점으로 매년 1천 명 이상, 2006년부터는 매년 2천명 이상, 그리고 2009년에는 3천명에 가까운 2,914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 탈북억제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 입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2년에는 1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은 1998년 기준 947명에서 2018년 9월 기준 32,147명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비율은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을 기준하여 여성 비율이 12%에 불과하여 남성의 입국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그러나 이후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기준 55%를 기록하여 절반을 상회하였다. 2015년 기준 80%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기준 83%, 그리고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여성의 비율이 86%로 증가함에 따라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일부, 2018). 연령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8월 기준, 사회 적응력이 높은 20대와 30대 입국자가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었다. 30대가 29.2%(8,57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0대 28.3%(8,312명), 40대 16.8%(4,939명), 50대 5.4%(1,593명), 10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4.2%(1,238명) 순으로 각각 보고되었다(통일부, 2017).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고용률은 2008년 기준 44.9%에서 2017년 기준 56.9%로 증가한 반면, 실업률은 2008년 기준 9.5%에서 2017년 기준 7%로 감소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2008년 기준 49.6%에서 2017년 기준 61.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신 외, 2017). 따라서, 국내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소득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국내 입국 당시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약 80%상당에 이르며, 전문대 이상은 약 16.5% 정도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일반인에 비해 저조한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영신 외, 2017). 특히, 초·중·고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학교 중단율은 2008년 기준 10.8%에서 2017년 기준 20%로 크게 증가하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낮은 교육수준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

이탈주민 8,885 명 중에서 무려 19%(1,687명)가 범죄 경력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10.1%(899명)가 살인, 강간, 그리고 상해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어(김윤영, 2007) 적지 않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3만명을 초과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율의 증가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더 이상 간과될 수 없는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적 냉소주의 모델(legal cynicism model)과 절차적 정당성 모델(procedural justice model)

Tyler(1990)와 Sherman(1993)은 시민이 느끼는 법집행의 정당성이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범죄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적냉소주의(Legal Cynicism)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신뢰도가 범죄피해의 신고를 기피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Kirk와 Papachristos(2011)는 법적냉소주의를 “사람들이 법, 특히 경찰을 정당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냉담하며, 공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어떠한 문화적 분위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적 냉소주의가 지역의 폭력범죄를 증가시키는 반면 지역 주민과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법적 냉소주의가 팽배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Weber(1968)는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이 내린 결정의 정당화, 국가권력이 자신의 시민들을 다루는 공정함 등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를 적절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yler(1990)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주체를 형사사법기관에 한정해 형사사법기관이 원활한 법집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로 ‘정당성’을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대중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뜻하는데, 대중이 경찰을 절차상 공정한 방식으로 시민을 대우하는 조직으로 바라본다면, 대중은 경찰을 정당성 있는 기관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Murphy, Hinds & Fleming, 2008; Sunshine & Tyler, 2003; Tyler, 2003; 2004).

절차적 정당성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경찰이 법집행을 하면서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며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율

또한 증가한다. 범죄피해의 신고 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을 가진 피해자일수록 추가 범죄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Hickman & Simpson, 2003)와 경찰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가범죄피해를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Goudriaan et al., 2005; 2006)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Skogan와 Frydl (2004)의 연구는 대중과 경찰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경찰의 정당성이나 경찰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부정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최근 국내에도 법적 냉소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는데 과거 경찰의 태도나 형사 절차상에서 불만족한 경험했거나 침입절도 같은 경미한 피해인 경우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하여 신고를 기피한다는 연구결과(박철현 · 김수빈, 2018)가 있다. 반면에, 경찰역량에 대한 신뢰와 범죄신고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거나 관련성이 불안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송윤아, 2014; 탁종연, 2010)도 있다.

3. Donald Black의 법행동 이론

Donald Black(1976)의 ‘법행동(The Behavior of Law)’ 이론에서, 법은 ‘양적 변수’로 논의 되어 진다. 법의 양에 대한 측정은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및 처벌 수준 등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단계를 고려한다. 법의 작동은 일탈 또는 법 위반 행위의 발생과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법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법의 양의 분포는 일정하지 않고 사회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Black은 법의 양이 종적분화(stratification), 횡적분화(morphology), 문화(culture),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사회통제(social control)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예측 또는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황의갑, 2013; Baumer, 2002; Greenberg, 1982).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신고는 형사사법절차의 작용을 촉발 요인으로 법의 양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이다.

1) 종적분화(Stratification)

종적분화는 경제적 조건의 수직적(vertical)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종적분화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양의 법을 갖는다(Black, 1976). 종적분화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기준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직업, 인종, 성별 및 연령까지 포함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개인들이 집단 단위로 계층화를 이루어 사회구조를 형성한다. 법 양의 수준은 차등화 된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비례의 관계로써, 높은 지위의 사람일수록 보다 많은 법을 사용한다(Black, 1976).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활발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체포, 기소 및 처벌과 같은 적극적인 징벌 형태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에 의하여 낮은 지위의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적 대응과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가혹한 징벌 등은 소극적일 공산이 크다(Black, 1976). 따라서 유동적 특성을 지닌 법의 양의 분포는 사회의 종적분화가 심화 될수록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높은 지위 사람들의 높은 범죄피해의 신고율을 기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Black의 종적분화의 지표로써의 연령과 인종이 범죄피해 신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와(Bachman & Coker, 1995; Kaukinen, 2004; Graham, Borg & Miller, 2013; Singler & Johnson, 2002) 소득수준과 학력수준(강지현, 2015; 박철현 · 구분희, 2018; 송윤아, 2014; 탁종연, 2010; Clay & McMahon, 2009; Felson, Steven, Anthony, & Glenn Deane, 2002)과 신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Black의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연구가 있는 반면에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2) 횡적분화(Morphology)

횡적분화는 사회관계의 수평적(horizontal)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적 거리를 의미하며 분업, 사회적 네트워크, 친밀감 및 통합성을 포함한다(Black, 1976; Borg & Parker, 2001). Black은 법사용 양의 분포를 사회구분(differentiation), 사회통합(integration), 관계의 거리(relational distance)의 세 가지 변수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Black, 1976; Wong, 2010). 사회구분은 Emile Durkheim의 노동의 분화 이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의 양과 곡선적(curvilinear) 관계를 설명한다. 분업이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단계까지 법의 사용이 증가하지만 상호 의존의 정도가 공생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감소한다(Black, 1976; Wong, 2010). 사회통합은 사회제도에서의 관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회에 충분히 통합된 구성원은 소외된 구성원보다 더 많은 법을 사용한다(Black 1976). 관계의 거리(relational distance)는 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Black은 사회구분, 사회통합, 관계의 거리가 높거나 멀어질수록 법의 양이 증가하며 그 정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다시 감소한다고 설명한다(Black, 1976).

선행연구에서 개인적 수준의 지표로서의 결혼여부, 고용 및 인간 간의 관계를 토대로 Black의 횡적분화가설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가 있다(Braithwaite & Biles, 1980; Felson & Pare, 2005). 고용률은 사회구분의 지표로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집합적 신념과 의식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용은 인간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황의갑, 2018) 대인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사회통합의 지표인 이혼률은 약한 사회통합을 초래하여 법의 사용을 감소시킴에 따라 총 범죄와 재산범죄의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3) 문화(Culture)

문화의 다양성은 법률의 양을 예측하고 설명한다. 한 사회 내에서 특정 문화의 출현은 법의 사용의 변화와 관련되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때 법의 양은 가장 크다(Black 1976). 따라서 법의 양은 문화와 정비례 관계에서 변화한다. 법사용의 양은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동질적인 사회보다 가치 충돌이 증가하기 때문에 커진다. 또한 각기 다른 양의 문화 간의 갈등에서는 소수 문화의 방향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Black, 1976). 즉, 소수 문화권의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류 문화권의 사람들은 경찰에 대해 범죄피해의 신고 가능성이 높고 경찰은 소수 문화의 사람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의 가능성은 높다(Black, 1976; Doyle & Luckenbill, 1991). 또한 주류 문화는 공식적인 교육 제도를 통해 형성되고 그 가치를 장려하며 강화한다. 따라서 교육은 종적분화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지표로서 해석 된다.

이민자는 Black의 문화에서 전형적인 비주류 문화권의 집단이다. 캐나다의 지역사회 연구에서 이민자 비율의 증가는 대부분의 범죄 해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민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주변성이 소극적인 법의 사용과 관련이 있으며(Wong, 2010) 이러한 비주류 문화권의 특성은 경찰에 대한 범죄신고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민자로 하여금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탁종연 · 노성훈, 2009). 교육수준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지역사회에서는 학력 수준이 범죄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Wong, 2010)반면, 미국의 지역사회의 고학력 비율은 높은

법의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Borg & Parker, 2001).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학력 수준과 범죄피해의 신고 관련성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4) 조직(Organization)

Black에 의하면 조직의 개념은 “사회생활의 단체적인 측면으로 공동체적 활동에 대한 능력”이다(Black, 1976 p.85; 황의갑, 2013; 2018, 재인용). Black은 조직의 양적인 측면은 법사용 양의 분포를 비롯하여 사회의 다각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법과 정비례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조직 범위는 공사적 조직을 포함하며 조직화된 집단들이 비조직적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더 자주 사용한다고 본다(Black, 1976). 예를 들면, 법적 분쟁에서 정부나 기업은 사인을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법의 양이 증가한다. 또한, 조직 중에서는 조직화 수준이 높은 조직일수록 법의 양이 많다(노성훈, 2012). Borg와 Parker(2001)의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역량이 풍부한 지역사회에서는 범죄피해의 신고율이 높으며 범죄에 대한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활발하다. Doyle과 Luckenbill(1991)의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을 위한 여러 형태의 치안조직의 활성화는 경찰의 범죄인지를 더욱 용이하도록 기여하며 이러한 조직은 지역사회 내의 조직화 수준이 높은 다른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므로 결국 집단행동의 역량이 높은 조직은 법사용 양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사회통제(Social Control)

사회통제는 법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사회통제와 조직 내의 관료적 통제, 그리고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를 포함한다(Black, 1976). 비공식 통제는 가족, 친구 등의 친근한 집단 내에서 이해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로 통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Black, 1976; 황의갑, 2013; 2018 재인용; Borg & Parker, 2001). 이와 같이 비공식 통제는 그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유동적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에 의한 사회적 통제인 법의 양은 다른 관료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와 반비례의 관계에서 변화한다(Black, 1976). 즉, 관료적 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감소하면 법의 양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민자와 같이 주류사회를 수용하지 않는 집단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과 형사사법기관의 개입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통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수

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lack(1976)에 의하면 낮은 사회적 통제를 받는 개인, 즉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큰 어린이,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은 보다 많은 법을 사용한다(탁종연, 2010). 법의 양은 균형적인 측면으로 분배되어 이들이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 감소하지만, 피해자인 경우는 증가한다(Lally, 2014).

선행연구에서 비공식 통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는 경찰의 개입을 그들의 가장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Carter, 1983), 중국계 이민자들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개입을 요청하기 보다는 자신들만의 방식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Wong, 1995). 또한 사회적 통제가 낮은 개인으로 분류되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에 경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Demuth & Steffensier, 2004),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상대에 대한 강한 징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박미량, 2018)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의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법적 냉소주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Black의 범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법적 냉소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Goudriaan et al., 2005; 2006; Kirk & Papachristos, 2011; Murphy et al., 2008; Sunshine & Tyler, 2003; Tyler & Fagan, 2008)는 대중과 가장 빈번한 접촉의 경험의 대상인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냉소적인 태도와 법의 절차적 정당성 수준의 측정 기준으로써 법의 공정한 작용에 대한 인식, 법을 신뢰하는 정도, 그리고 법의 필요성 대한 인식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가설을 도출하였다. 범행동이론에 따른 종적분화의 지표는 조사대상자들의 한국 사회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소득수준과 연령집단의 계층화에 따른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가설을 제시하였다. 문화의 지표로는 한 사회의 주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통제는 사회적으로 낮은 통제를 받는 개인으로 여성 집단을 지표로 설정하여 가설을 도출 하였다.

1) 법적 냉소주의:

가설1a: 법적 냉소성이 낮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2) 법적 절차적 정당성:

가설2a: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2b: 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2c: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3) 법행동이론:

(1) 종적분화

가설3a: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가설3b: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2) 문화

가설4a: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3) 사회통제

가설5a: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신고 의지가 높을 것이다.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7년도 7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연령 19세 이상의 자들로서 한국정착기간이 1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되었다. 통일부(2018)는 2017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의 북한이탈주민 거주 비율은 전국 28,473명의 64.1%(18,259명)정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800명의 조사대상자들은 국내 거주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8%에 해당하는

인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수도권 거주자인 경우에도 취업을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에서의 거주 비율은 공식적인 자료에서 보여주는 수치 이상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할당표집은 수도권의 구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300인 이상의 거주지역을 우선 분류한 후 11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지역의 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표집인원의 할당 작업을 거쳤으며, 11개 지역별로 분포하는 성별과 연령별로 조사대상자의 인원수를 재할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의 구성은 조사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법의식과 관련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영역으로는 법에 대한 지식과 법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포함되었으며, 정서적 영역에서는 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 및 준법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다루었다. 그리고 행동적 영역의 법의 사용 의사와 법적 효능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에서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진행된 응답자들의 법 관련 경험 및 인식, 법적 분쟁 경험 및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 법교육 경험 및 법교육의 수요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변인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의지’이다. 응답자의 가정폭력 범죄 발생 시 경찰에 대한 신고 여부에 대한 진술 문항과 응답자가 범죄현장을 목격한 경우에 경찰에 대한 신고 의지에 대한 진술 문항을 각각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신고 의지를 강도의 정도에 따라 측정하기 위해서 진술에 대한 답변 항목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변수값=1)’, ‘별로 그렇지 않다(변수값=2)’, ‘대체로 그렇다(변수값=3)’, ‘매우 그렇다(변수값=4)’의 순서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였다.

독립변인의 법적 냉소주의에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에 대한 견유적 태도를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두 문항은 동일한 진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적 냉소주의 모델에 부합하는 진술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선택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법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항목은 3가지의 관련 진술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법은 대중의 경제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공정하게 작용하는

지 또는 법원의 판결은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의 진술에 대한 답변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는 조사대상자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측정으로써, 응답자가 곤경에 처했을 때 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법으로부터 기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에 대한 신뢰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끝으로, 법 존립의 목적으로써 법이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장,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또는 법이 대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존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Black의 법행동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Black이 제시한 주요 사회관계를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종적분화(stratification)의 지표로써 조사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월평균 가구의 총소득을 100만원 미만(변수값=1), 100만원~200만원(변수값=2), 200만원~300만원(변수값=3), 300만원~400만원(변수값=4), 400만원 이상(변수값=5)까지 5점 척도로 구분 측정하였다. 조사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5.3%, 300만원 이상의 경우가 7.3%에 불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은 남한의 일반 주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했다(최영신 외, 2017). 종적분화의 또 다른 지표인 연령은 10대(변수값=1), 20대(변수값=2), 30대(변수값=3), 40대(변수값=4), 50대(변수값=5), 60세 이상(변수값=6)의 순서로 6개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문화(culture)의 지표로써의 교육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응답자들의 학력수준을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5.1%, 대학원 이상의 학력은 2%로 측정되어 남한의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남한과 북한에서의 학력을 통합하여 측정하였으며, 무학(변수값=1), 초등학교 이하(변수값=2), 중학교 이하(변수값=3), 고등학교 이하(변수값=4), 대학교 이하(변수값=5), 대학원 졸업 이상(변수값=6)까지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지표인 남녀 성별은 남성(변수값=1)과 여성(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자의 범죄 및 불법관련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범죄피해경험과 범죄가해경험을 ‘경험 있음(변수값=1)’과 ‘경험 없음(변수값=0)’의 이분형 변수로 코딩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범죄와 마약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인 상황 이해도는 마약과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진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에서 위반여부와 가중처벌에 관한 인식수준에 대해서 ‘그렇다(변수값=1)’과 ‘아니다(변수값=0)’의 이분형변수로 코딩하였다. 응답자의 준법의식과 관련 있는 불법수용도는 전혀 그렇

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결과

모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경찰에 대한 범죄피해의 신고의지 평균은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보통 수준의 범죄피해의 신고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의 응답자들의 법적 냉소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사회에 대한 법적 냉소성 수준이 중간값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남한에서는 중간값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사회에 대한 법적 냉소성이 남한사회에 대한 법적 냉소성 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의 변인에서는 법의 공정성 인식수준과 법신뢰도 및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중간값을 상회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중간값 이상임을 보여준다. 법행동이론의 종적분화 지표인 소득수준의 평균은 중간값에 크게 하회하여 대부분의 북한이탈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월평균 100만에서 200만(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N=8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인				
범죄피해신고의지	6.9587	.97438	3.00	8.00
법적냉소성주의				
법적냉소성(북한)	7.7744	2.22008	3.00	12.00
법적냉소성(남한)	6.3308	2.04119	3.00	12.00
법절차적정당성				
법공정성인식수준	12.3170	2.21118	4.00	16.00
법신뢰도	15.4925	1.97944	7.00	20.00
법필요성인식수준	14.9086	1.49029	10.00	16.00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법행동이론				
소득	1.7304	1.00036	1.00	5.00
교육	4.1339	.82312	1.00	6.00
연령	3.6663	1.19965	2.00	6.00
성별(남성=1)	1.7225	.44805	1.00	2.00
통제변인				
피해경험	.0840	.27750	.00	1.00
가해경험	.0902	.28668	.00	1.00
법적상황이해도	4.1170	1.07504	.00	5.00
불법수용도	6.8235	2.32942	4.00	15.00

Note: * $p < .05$, ** $p < .01$, *** $p < .001$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40대(29.9%)가 가장 많았다. 문화의 지표인 교육수준의 남한과 북한의 통합 학력수준은 고등학교(4)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통제의 지표인 여성의 응답자가 72.3%로 남성 응답자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국내 입국하는 여성 북한이탈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의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피해경험은 8.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9%의 응답자는 범죄의 가해 경험으로 경찰서에 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법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을 수용하는 정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분석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냉소성의 신고의지에 대한 영향력을 북한과 남한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남한에서의 법적 냉소성은 범죄신고 의지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론적 가설과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법적 냉소성은 범죄신고 의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절차적 정당성의 지표인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 법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의 신고 의지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법행동이론의 종적분화(stratification) 지표인 소득수준은 범죄피해의 신고 의지와 유의

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적분화의 또 다른 지표인 연령은 종속변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블랙의 이론적 설명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화(culture)에서 지표로 논의되는 교육수준은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사회통제(social control)에서의 지표인 남녀 성별 역시 범죄피해의 신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응답자의 법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수준은 신고의지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불법을 수용하는 정도는 신고의지에 부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범죄에 대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각각 범죄피해의 신고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변량 분석기법 중의 하나인 상관관계분석은 가용한 다른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조건에서 단순 쌍방향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참고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의 신고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이변량 상관관계 (N=800)

변인	1	2	3	4	5	6	7
1.범죄피해신고의지	1						
2.법적냉소성(북한)	.033	1					
3.법적냉소성(남한)	-.144**	.008	1				
4.법공정성인식수준	.309**	.065	-.190*	1			
5.법신뢰도	.458**	.022	-.152**	.384**	1		
6.법필요성인식수준	.396**	.123**	-1.77**	.351**	.378**	1	
7.소득	.037	.083*	-.092**	.012	.063	.028	1
8.교육	.007	.043	-.128**	-.015	.002	-.013	.068
9.연령	-.071*	.024	.122**	.139**	-.030	.085*	-.121**
10.성별	.060	-.087*	.088*	-.032	.034	.127**	-.206**
11.피해경험	-.056	-.027	.045	-.051	-.050	-.042	-.009
12.가해경험	-.022	.088*	.004	-.005	-.025	.034	.067
13.법적상황이해도	.208**	.029	-.043	.126**	.202**	.162**	.053
14.불법수용도	-.208**	-.058	.324**	-.312**	.210**	-.213**	-.094**

변인	8	9	10	11	12	13	14
8.교육	1						
9.연령	-.090*	1					
10.성별	-.052	.007	1				
11.피해경험	.038	-.080*	-.155**	1			
12.가해경험	.023	.051	-.244**	.362**	1		
13.법적상황이해도	.028	-.012	.057	-.097**	-.022	1	
14.불법수용도	-.151**	.076*	.095**	.040	.018	-.110**	1

Note: 입력한 값은 피어슨 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중회귀분석은 아래 <표 3>과 같이 범죄신고 의지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서 법적 냉소주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Black의 범행동이론에 따른 요인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종속변수에 대한 법적 냉소성에 대한 결과이다. 결과 값에서 북한과 남한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남한에서는 응답자의 법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낮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의 법적 냉소주의가 지역주민과 경찰 간의 협력관계(범죄신고 등)를 약화시킨다는 Kirk와 Matsuda(2011)의 설명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북한에서의 법에 대한 냉소주의적 인식은 범죄신고 의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북한과 남한에서의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법적 냉소주의가 그 사회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어떤 문화적 분위기의 지향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Kirk & Papachristos, 2011). 따라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모형 2는 종속변인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정당성의 지표로써 법의 공정성 인식수준, 법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은 범죄신고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절차적 정당성은 대중에 대한 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중의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범죄신고율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설명과 부합하는 결론이다. 결정계수값(R^2)은 절차적 정당성이(28.3%) 법적 냉소주의(8.2%)와 Black의 범행동 이론(7.9%)보다 높아서, 절차적 정당성 모형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은 Black의 범행동이론에 따른 가설을 검증한 것이다. 본 회귀모형의 결과는 Black의 가설과 부합하지 않는다. 높은 경제적

지위와 높은 연령, 그리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낮은 사회적 통제를 받는 개인 집단으로써의 여성은 더 많은 법을 사용(범죄신고 등)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어떠한 변인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각 이론의 영향력을 검증한 통합모형인 모형 4에서 법적 냉소성은 범죄신고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에서는 모든 변인이 범죄신고 의지에 강하고도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lack의 법행동이론의 종적분화의 지표인 연령은 음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Black의 가설에 상반되는 영향을 보였다. 그러나 Black의 종적분화의 수득수준, 문화의 교육수준, 그리고 사회통제의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여전히 없었다. 통제변인의 법적상황이해도는 범죄신고 의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범죄피해경험과 범죄가해경험 및 불법수용도는 신고의지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합모형에서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R2값은 28%로 측정되어 상당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β	<i>t</i>	β	<i>t</i>	β	<i>t</i>	β	<i>t</i>
법적냉소주의								
법적냉소성(북한)	.014	.407					-.005	-.171
법적냉소성(남한)	-.090	-2.459*					-.026	-.771
절차적정당성								
법공정성인식수준			.088	2.503*			.112	3.092***
법신뢰도			.307	8.812***			.288	8.121***
법필요성인식수준			.226	6.584***			.231	6.506***
법행동이론								
소득					.020	.553	.004	.132
교육					-.018	-.524	-.013	-.415
연령					-.050	-1.421	-.079	-2.464*
성별					.068	1.838	.025	.748
통제변인								
피해경험	-.022	-.595	-.006	-.196	-.018	-.475	.001	.030
가해경험	-.002	-.061	-.016	-.486	.015	.394	-.004	-.118
법적상황이해도	.181	5.178***	.088	2.799**	.178	5.067***	.082	2.563*
불법수용도	-.166	-4.503***	-.058	-1.776	-.200	-5.645***	-.043	-1.244
F-value	12.401***		44.579***		0.214***		23.826***	
R ² (Adjuted-R ²)	.089(.082)		.289(.283)		.088(.079)		.295(.283)	

Note: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수도권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8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법적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Black의 법행동이론에 근거하여 도출된 주요변수들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하자면, 법적 냉소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법적 냉소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남한에서의 법적 냉소성은 범죄신고 의지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체제와는 달리 법치주의 체계를 따르는 남한사회의 법률체계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회귀분석모형에서 그러한 유의미성이 사라졌으며 이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남한과 북한에서의 법적 냉소성이 신고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법에 대한 신뢰도 및 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세 가지 모든 지표에서 신고의지에 대한 유의미하고 기대했던 방향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범죄피해의 신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Goudriaan et al., 2005; 2006; Hickman & Simpson, 2003; Murphy et al., 2008; Sunshine & Tyler, 2003; Tyler, 2003; 2004) 결과들과 일관된 내용이었다.

법행동이론에 근거한 소득, 교육, 성별 등의 지표는 범죄신고 의지에 어떠한 영향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연령은 높을수록 범죄신고 의지가 약해지는 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종적분화에 있어서 높을수록 법의 사용에 해당하는 범죄신고 의지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과 상반된 결과였다. 오랜 도덕주의 전통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연령이 높은 분들일수록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덕치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서구의 개인주의 영향을 강하게 접하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법을 통한 공식적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화적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통제변인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피해경험이나 가해경험 그리고 불법수용도 등이 범죄신고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법적상황 이해도는

유의미하고도 중요하게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신고 의지가 낮아지며, 법적 상황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신고의지도 높아진다는 결이므로 정책적으로 신고의지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법적 냉소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설문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는 법적 냉소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찰과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Cremer & Tyler, 2007; Sherman, 1993; 2003; Tyler, 2004; Murphy, 200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경찰의 활동에 관련한 것보다는 법지식, 법감정, 법문화, 법정신, 법태도, 법관념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과 관련한 태도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주로 지인, 인터넷 법률정보,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은 신변보호담당관이나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60% 이상이며 하나원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72%)가 한국사회를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남북한의 용어 차이의 때문(70%)에 남한에서의 법교육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최영신 외, 2017), 본 연구에서 범죄신고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로 도출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수준 고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함과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법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자료제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Black의 법행동이론에 근거한 종적분화의 지표인 소득수준과 문화의 지표인 학력 수준, 그리고 사회통제의 지표인 성별은 모두 범죄피해의 신고의지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행동이론에 기반한 가설이 우리사회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론 적용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분석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서구의 세 가지 이론적 근거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용하여 범죄신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짚어보고자 하였다. 범죄신고 관련한 연구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구의 이론을 우리 사회 특수한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Black의 법행동이론이라는 사회 거시적 설명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미시적인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한국 법률문화 및 형사 사법시스템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가설과 분석기법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현 (2015). 폭력과 절도의 경찰신고 결정요인 분석: KCVS 2008-2012. *형사정책연구*, 26(2), 241-265.
- 국가통계포털 (2018). 「통계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행정서비스 이용시 이용 방법_범죄 신고
- 김윤영 (2007).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7(3), 71-99.
- 노성훈 (2012). 이민자 지위와 범죄심각성이 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3(1), 285-317.
- 박미량 (2018). 양형기준 밖의 양형요인으로서 법조인 연구: 살인범죄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7(1), 101-130.
- 박철현, 구본희 (2018).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 Black VS. Feminist. *한국범죄학*, 12(2), 121-137.
- 박철현, 김수빈 (2018). 법적 냉소주의와 침입절도피해의 신고. *공공정책연구*, 34(2), 135-150.
- 송윤아 (2014). 지역사회 특성이 범죄피해 신고결정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5(4), 415-444.
- 최영신, 김대근, 채경희 (2017).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탁종연 (2010). 범죄피해자의 신고 결정요인 분석 : 절도와 사기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3), 53-74.
- 탁종연, 노성훈 (2009). 인종이 범죄피해신고에 미치는 영향: 동양계 미국인의 강도와 폭행피해 신고경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8, 41-70.
- 통일부 (2017). 2017년 정착지원 실무편람.
- 통일부 (2018). 2018년 북한이탈주민정책.
- 황의갑 (2013). 범죄사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2(1), 273-294.
- 황의갑 (2018). 경찰의 공식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 요인: 도널드 블랙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지*, 11(3), 190-210.

2. 국외문헌

- Bachman, R., & Coker, A. (1995). Police involvement in domestic violence: The interactive effects of victim injury, offender's history of violence and race. *Violence and Victims, 10*, 91-106.
- Baumer, E. P. (2002).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3), 579-616.
- Black, D. (1976). *The Behavior of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Borg, M. J., & Parker, K. F. (2001). Mobilizing law in urban areas: The social structure of homicide clearance rates. *Law & Society Review, 35*, 435-466.
- Braithwaite, J., & Biles, D. (1980). Empirical Verification and Black's "The Behavior of Law".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2), 334-338.
- Carter, D. L. (1983). Hispanic inter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exas: Experiences, attitudes, and percep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1*(3), 213-227.
- Clay-Warner, J., & McMahon-Howard, J. (2009). Rape Reporting: "Classic Rape. *Violence and victims, 24*(6).
- Cremer, D. D., & Tyler, T. R. (2007). The effects of trust in authority and procedural fairness on cooper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3), 639-649.
- Demuth, S., & Steffensmeier, D. (2004). Ethnicity effects on sentence outcomes in large urban courts: Comparisons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defend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5*(4), 994-1011.
- Doyle, D. P., & Luckenbill, D. F. (1991). Mobilizing law in response to collective problems: A test of Black's theory of law. *Law & Society Review, 25*, 103-116.
- Felson, R. B., & Paré, P. P. (2005). The reporting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by non-strangers to the poli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3), 597-610.
- Felson, R. B., Messner, S. F., Hoskin, A. W., & Deane, G. (2002). Reasons for Reporting and Not Reporting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Criminology, 40*(3), 617-647.
- Goudriaan, H., Wittebrood, K., and Nieuwbeerta, P. (2005).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reporting crime: Effects of social cohesion, confidence in police effectiveness and socio-economic disadvantag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6*(4), 719-742.
- Graham, K. T., Borg, M. J., & Miller, B. L. (2013). Mobilizing Law in Latin America: An Evaluation of Black's Theory in Brazil. *Law & Social Inquiry, 38*(2), 322-341.
- Greenberg, D. F. (1982). Donald Black's sociology of law: A critique. *Law & Soc'y Rev., 17*, 337.
- Hickman, L. J., & Simpson, S. S. (2003). Fair treatment or preferred outcome? The impact

-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 Society Review*, 37(3), 607-634.
- Kaukinen, C. (2004). The help-seeking strategies of female violent crime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24.
- Kirk, D. S., & M. Matsuda. (2011). Legal Cynicism, Collective Efficacy, and the Ecology of Arrest. *Criminology*, 49, 443-472.
- Kirk, D. S., & Papachristos, A. V. (2011). Cultural mechanisms and the persistence of neighborhood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6, 1190-1233.
- Lally, W. E. (2014). *The Application of Social Geometry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Cases of Assault*. Doctoral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Murphy, K. (2009).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performance in Police-Citizen encounter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2(2), 159-178.
- Murphy, K., Hinds, L., & Fleming, J. (2008). Encouraging public cooperation and support for police. *Policing and Society*, 18(2), 136-155.
- Sherman, L. W. (2003). Reason with emotion: Reinventing justice with theories, innovations, and research. *Criminology*, 41, 1-37.
- Sherman, L. W. (1993).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445-473.
- Simmel, G. (1950). The stranger.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402, 408.
- Singler, R. & Johnson, I. (2002). Reporting violence acts to the police: A difference by race.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5, 274-293.
- Skogan, W. G., & Frydl, K. eds. (2004). *Fairness and effectiveness in policing: The evidence*.
- Sunshine, J., & Tyler, T. R. (2003). The role of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 in shaping public support for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37, 513-548.
- Tyler, T. R. (1990). *Why people obey the law*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 Tyler, T. R. (2003).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and the effective rule of law. *Crime and Justice*, 30, 283-357.
- Tyler, T. R. (2004). Enhancing Police Legitimac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3, 84-99.
- Tyler, T. R., & Fagan, J. (2008). Legitimacy and Cooperation: Why Do People Help the Police Fight Crime in Their Communities? *Journal of Criminal Law*, 6, 231-275.
- Weber, M. (1968).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
- Wong, M. G. (1995). Chinese Americans, In P.G. Min (Ed.)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pp.58-9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Wong, S. K. (2010). Crime clearance rates in Canadian municipalities: A test of Donald Black's theory of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38(1), 17-36.

【Abstract】

**The Theoretical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Legal Cynicism,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Seongju Hong · Juhee Kim · EuiGab Hwang

Not much is known about the factors of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Based on the survey of 800 North Korean refuge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factors influencing North Korean refugees' willingness of reporting crime. Focusing on the legal cynicism, procedural justice, and the behavior of law theory, this research verified that procedural justice model is most important in explaining their willingness to report crime. Variables under procedural justice model(i.e., perceived fairness of the law, confidence in the law, and perceived necessity of the law) were significant in an expected direction.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hypotheses based on social conditions derived from the five types of stratification, morphology, culture, organization, and social control presented by Donald Black (1974)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 to report crim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Keyword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Legal cynicism, Procedural justice, Behavior of law, North Korean refugees